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901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농·임·어업인에게 공급하는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 세율 한시 적용(김상훈의원안)	3

I. 개요

1.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90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0. 25.
- (3) 회 부 일 : 2024. 10.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민과 임업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됨에 따라, 산지에서 출하되는 농수산물·임산물의 운송용역 등 물류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불완전 면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세한 농어민과 임업인은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관행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영세 운송업체와 무자료 거래를 해 오고 있어 그 부작용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현실적으로 농수산물·임산물의 운송용역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최근의 농산물 물류지원금 폐지 등으로 영세한 농어업인과 임업인의 물류 관련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이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아울러 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무자료 운송업자와의 거래가 성행함으로써 운송물 파손, 분실, 도난과 운송시간 지연 등에 따른 손실을 산지 생산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관련 정책 수립과 운용에 필요한 운송 규모와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음으로써 농정 계획·집행에서의 비효율도 커지고 있음. 그리고 이는 선진 물류업체의 산지 시장진입을 가로막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고도화’와 ‘스마트 농산물 유통혁신 기반 조성’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용·임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에 대한 경우 외에, 농수산물·임산물 운송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렇게 하여, 세제혜택을 통한 운송비의 감소로 농가소득이 직접적으로 높아지도록 하고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으며 청년농 육성을 통한 지역 고용증대에도 기여함으로써 최근 심각해져 가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의 국가적 위기 대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그리고 물류 표준화와 정보화 달성의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설비와 운송 노하우를 갖춘 전문 운송업체의 운송시장 진출, 농산물 신선도 유지, 포장 개선과 오염원 차단 등도 가능하게 하여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임.

또한, 무자료 거래의 퇴출로 농가 등의 거래 규모와 운송 품목 등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계되어, 품목별·규모별로 정책을 효율적으로 계획·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자료 거래의 세원(稅源) 노출에 따라 정부의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산지 운송업체 간 과세형평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농·임·어업인에게 공급하는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한시 적용(김상훈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105조제1항) ☐ 영세율 적용대상 -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군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 건설용역, 장애인용 보장구, 농·임·어업인에 공급하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 <신 설>	☐ 영세율 적용 대상 추가 ☐ 영세율 적용대상 - (현행과 같음) - <u>농·임·수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농·임·어업인에게 공급하는 운송용역</u>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 김상훈의원안 2024. 10. 25. 발의(의안번호 4901)

☐ 개정안은 농·임·수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농·임·어업인에게 공급하는 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 등에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¹⁾, 그 외에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 방산물자,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외국항행용역, 외화 획득을 위한 재화·용역이 있음.

군납용 석유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과 그 건설용역, 장애인용보장구,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영세율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영세율 제도는 부가가치세율을 '0'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면세 제도와 달리 전단계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다는 점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됨(이론상 '완전면세').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농·임·어업인에게 공급한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세함으로써 농·임·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음.

영세 산지 농어민과 임업인은 부가가치세의 절감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운송사업자와 거래하는 대신 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무자료 운송업자와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물 파손, 분실, 도난 등에 따른 손실을 산지 농어민 등이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세제지원을 통해 영세 산지 농어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농산물 물류비는 유통비용(53조 9,096억원) 중 26.9%(14조 4,846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대비 20.4%(2조 4,546억원) 증가한 수치임. 또한, 유통 단계별 물류비 비중은 산지 출하단계가 6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산물 생산자 출하액·유통비용·소비자구입액 현황]

구분	생산자 출하액 (A)	유통비용(B)			소비자 구입액 (C=A+B)
		물류비	기타유통비용	계	
2021	56조 5,609억원 (51.2%)	14조 4,846억원 (13.1%)	39조 4,250억원 (35.7%)	53조 9,096억원 (48.8%)	110조 4,705억원 (100.0%)
2020	48조 601억원 (52.5%)	12조 300억원 (13.1%)	31조 4,530억원 (34.4%)	43조 4,830억원 (47.5%)	91조 5,431억원 (100.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산물 단계별 물류비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출하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합 계	
	물류비	비 율	물류비	비 율	물류비	비 율	물류비	비 율
합 계	96,101	66.3	26,858	18.5	22,092	15.2	145,052	100.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둘째, WTO 수출보조 철폐 합의²⁾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4년 1월 1일부터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전격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지의 농산물 판매단가 인상 및 수출 경쟁력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것은 폐지된 농산물의 수출물류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2015년 WTO 10차회의 결과 수출보조 철폐에 합의한 결과, 당시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던 우리나라는 수출물류비 지원 8년 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됨.

셋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²³⁾에 따라 농·임·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중이므로, 식량안보 측면에서 농·어업 등 1차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우리나라는 극히 제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특정 재화의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를 적용한 사례가 없어 개정안과 같이 농·임·수산물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과세형평성 문제와 타 분야에 대한 적용 확대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농·임·수산물과 일반화물을 함께 운송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등 탈세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둘째, 현재 농업인에 대해서는 영농비용 절감을 위하여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근거로 다양한 조세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농업인에 대한 조세정책]

근거		내용
「소득세법」 제12조		· 식량작물재배업 비과세 · 10억원 이하 일반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 비과세 · 5천만원 이하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69조	·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2항	·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제105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문 의 처

02)6788-5160